투자위험등급: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3		5	6
매우 높은 위험	높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인도네시아단기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인도네시아단기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인도네시아단기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 키움채권목표전환형증권

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하나은행,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외) 본·지점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7년 10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2017년 11월 1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좌는 1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17년 8월 7일 ~ 2017년 8월 18일

※ 이 투자신탁의 신규 정정(취소) 거래는 판매회사에서 정하는 상품 모집기간 내 이 투자신탁의 거래가능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 정해진 전환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전략의 변경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보유중인 자산(인도네시아 집합투자증권 등)의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 및 환율(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미국 달러(USD))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전환 기준이 된 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2017.10.31)

키움인도네시아단기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BU586]

[운용전환일 이후] 키움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안 함	유 유 유 유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이 위험

이 요약정보는 '키움인도네시아단기채권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 키움 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진한투자기구의 개요

	1. 십압구/	사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일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	의 손실이 발생할 기재사항이 진실 · 승인하지 아니함을 ·자기구의 경우 파성 보일 때에는 당초 있습니다. 로부터의 기간에 투자신탁으로서, · 있습니다. !서 효력발생일까지 권인 경우 효력발생	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따라 정해진 전환조건을 달성하는 투자전략의 변경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전까지는 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며,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주로 투자하여 수익 추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재간접형	[], 개방형, 단위형	,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1	a 02-789-0300)				
모집[판매] 기간	2017년 8월 7일 ~ 2017년 8월 18일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좌는 1원 기준)			
효력발생일	2017년 11월 10일	존속 기간	아래 주1) 참고			
판매회사	하나은행,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외					

- 주1)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 합니다.

종류	F[Class]	A	C					
기	입자격	가입제한 없음 (선물	취판매수수료 징구)	가입제한 없음				
환	매수수료	1년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10%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해당사항 없음)						
	구분	전환전	전환후	전환전	전환후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0% 이내	-	_	-			
보수 판매		0.30	0.10	0.80	0.15			
연,%) 운용 등		주1)	주2)	주1)	주2)			
(한,70)	기타비용	_	_	_	_			

총보수비용	0.645	0.245	1.145	0.295
합성 총보수 • 비용	2.025	0.245	2.525	0.295

- 주1) 전환 전 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30, 신탁업자보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15
- 주2) 전환 후 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10, 신탁업자보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15
- 주3) 생략된 종류(Class A-e, C-e, C-F)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4)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 주5)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6)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주7) 합성총보수 · 비용의 경우 피투자 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 포함

매입 방법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부대 방법 - 17시이전: 13영업일 기준가/ 15영업일 지급 - 17시경과후: 14영업일 기준가/ 16영업일 지 - 15시30분이전: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 15시30분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급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공고 기준가격 = 직전일 순자산총액/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해외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1) "운용전환일"이라 함은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6영업일** 이내를 말합니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하며,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주2) "목표기준가격"이라 함은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게시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1,060원
 - 나.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80원
- ※ 목표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관찰하므로, 개별 클래스 펀드의 기준가격(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감안한 기준가격(수정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am.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인도네시아 현지 MMF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MMF 등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매도하고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 채권 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③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운용전환일: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6영업일 이내를 말합니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하며,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 "목표기준가격"이라 함은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게시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내 기준가격이 1,060원, 1년경과후 1,080원 이상인 때를 말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 목표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관찰하므로, 개별 클래스 펀드의 기준가격(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감안한 기준가격(수정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am.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 투자신탁의 투자전략과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2017.10.31. 현재)

				운용현황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다른 운용		
				집합투자기구 수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u> 김진이</u>	1982	팀장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채권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수익률 추이)

- 신규설정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1-1.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혜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외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변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는 경제, 정치, 시장 및 발행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산업, 금융시장 및 증권은 이러한 변화에 달리 반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의 새로운 변동성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달성후 투자대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수익률 달성으로 전환조건이 달성된 경우에 투자대상을 전환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대상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전략 변경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산(인도네시아 집합투자증권 등)의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 및 환율(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미국 달러(USD))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전환 기준이 된 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환매를 위하여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투자신탁의 해지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또는 환매에 따른	비중을 조정하거나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환매를 위하여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추가 손실 발생	과정에서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 및
위험	환율(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미국 달러(USD))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 누적성과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6등급 중 <mark>3등급(다소 높은 위험 수준)</mark>에 해당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 수준)에 해당)
-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투자위험 등급은 추후 펀드의 설정기간이 3년을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①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혜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스왑, 옵션 등) 매매를 통하여 환혜지 전략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 ② 투자신탁 설정 초기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 ③ 위험관리를 위하여 투자환경 및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변화가 발생 시 포트폴리오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④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결산 시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됨에 따라 환매연도에 과세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
-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

[목 차]

제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9
	3.	모집예정금액	. 9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9
	5.	인수에 관한 사항	. 9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9
제2년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0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0
	4.	집합투자업자	1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0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5
	10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7
	11	. 매입, 환매, 전환기준	.21
	12	.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4
	13	.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6
	14	.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9
제3년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32
	1.	재무정보	3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2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3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3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34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5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5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6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6
제5년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7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7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0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0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3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43
[붙임	실]	용어풀이	4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키움인도네시아단기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키움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BU586)								
클래스(종류)	Α	А-е	С	С-е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U587	71 0 0 0 0 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채권-재간접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 단위형 구분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1좌는 1원을 기준으로 합니다.)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이투자신탁은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2017년 8월 7일 ~ 2017년 8월 18일
- 2) 모집장소 판매회사(하나은행,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외) 본·지점
-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 주1)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키움인도네시아단기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운용전환일 이후]키움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BU586)								
클래스(종류)	Α	A A-e C C-e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U587	7, 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7.8.18	- 최초 설정
2017.11.10	<u>-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안형상 → 김진이)</u>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 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로부터 1년간
 -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 합니다.
- 주1) "운용전환일"이라 함은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6영업일** 이내를 말합니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하며,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주2) "목표기준가격"이라 함은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게시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1,060원
 - 나.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80원
- ※ 목표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관찰하므로, 개별 클래스 펀드의 기준가격(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감안한 기준가격(수정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am.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3)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빌딩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7.10.31. 현재)

1) 운용전문인력

서머	생년	진위	운용현	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성명	갱인	47	운용중인 다른	다른운용	구호군 앙 성력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수	자산규모	
<u>김진이</u>	1982	팀장	_	_	- Columbia University 경영학 석사 - 키움증권 주식운용팀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채권팀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채권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u>안형상</u>	<u>2017.08. ~ 2017.11.</u>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채권-재간접형),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2)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가입자격	설정일
А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2017.08.18
А-е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u>2017.08.18</u>
С	가입제한 없음	<u>2017.08.18</u>
С-е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u>2017.08.18</u>
C-F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u>2017.08.18</u>
	포함합니다)	

나.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전까지

<u> </u>	3 1 1 1 1 1 2 2 2 1 1 2 3 2 2 2 1 1 2 3 2 2 3 1 1 2 3 2 2 3 3 2 3 2						
크레 시 (조리)	수수	보수 (연간, %)					
클래스(종류)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판매보수	운용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
А	납입금액의 0.70% 이내	_	414 -101	0.30	0.30	0.03	0.015
А-е	납입금액의 0.35% 이내	_	1년 미만	0.15	0.30	0.03	0.015
С	_	_	환매시:	0.80	0.30	0.03	0.015
С-е	_	_	이익금의 10%	0.40	0.30	0.03	0.015
C-F	_	_	10%	0.02	0.30	0.03	0.015

② 운용전환일 이후부터 해지일까지

크레 * (조르)	수수	보수 (연간, %)					
클래스(종류)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판매보수	운용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
Α	_	_	_	0.10	0.10	0.03	0.015
А-е	_	_	_	0.05	0.10	0.03	0.015

С	-	_	_	0.15	0.10	0.03	0.015
С-е	_	_	_	0.07	0.10	0.03	0.015
C-F	_	_	_	0.01	0.10	0.03	0.01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해외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1) "운용전환일"이라 함은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6영업일** 이내를 말합니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하며,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주2) "목표기준가격"이라 함은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게시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1.060원
 - 나.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80원
- ※ 목표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관찰하므로, 개별 클래스 펀드의 기준가격(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감안한 기준가격(수정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am.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집합투자증권	50%이상	-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가. 해외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로 합니다. 나.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로 합니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로 합니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이상으로 합니다.
채권	50% 미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발행기관 또는 해당 채무증권의 보증인이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취득 시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자산유동화 증권	50%미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50%미만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 시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것(취득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 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의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총액의 50%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 이하	-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없습니다. 나만, 밥	1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압니다.
구 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말합니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익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7.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8.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9.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비율 제한의 예외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1월간
 - 3.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4.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6.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 집합투자규약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용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③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④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항에서 같습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합니다)
 -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저
 -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⑤ 집합투자규약 제17조의 투자대상자산 중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인도네시아 현지 MMF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MMF 등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매도하고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 채권 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 운용전환일: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16영업일 이내를 말합니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하며,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 "목표기준가격"이라 함은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게시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1.060원
 - 나.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80원
- ※ 목표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관찰하므로, 개별 클래스 펀드의 기준가격(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이익분배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감안한 기준가격(수정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am.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④ 주요 투자대상국 현황

인 도 네 시 아		
인구	약 2억 5,220만 명	
화폐단위	Rupiah(Rp)	
GDP	8,885억 달러(2014년, 2015년 확정치 미발표)	
1인당 GDP	3,377달러(2015년)	
경제성장률	4.79%(2015년)	
산업구조	광업(석탄, 석유, 가스), 농업(고무, 팜유), 제조업(섬유, 자동차, 철강)	
주요 수출품목	석탄, 원유, 가스, 고무, 금속광물, 섬유, 신발, 종이제품	
주요 수입품목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 제품, 유기 화학 제품	

주1)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TRA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예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Mandiri
Mandiri Investa Pasar	소재지	인도네시아
Uang	주요 특징 및	인도네시아 MMF 중 가장 큰 규모, 60~70% 회사채,
	주요투자대상	30~40% 정기예금, 국영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Bahana TCW
Bahana Dana Likuid	소재지	인도네시아
Dariaria Daria Likulu	주요 특징 및	 100% 정기예금 투자, 국영(조인트벤처)
	주요투자대상	100% 정기에는 구자, 국정(오건트렌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Batavia
Batavia Dana Kas	소재지	인도네시아
Maxima	주요 특징 및	40~50% 회사채, 50~60% 정기예금,
	주요투자대상	외국계(보험계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Manulife Money Market	집합투자업자	Manulife

	소재지	인도네시아
	주요 특징 및	40~50% 회사채, 50~60% 정기예금,
	주요투자대상	외국계(보험계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Schroder
Schroder Dana Likuid	소재지	인도네시아
Schlodel Dana Likuld	주요 특징 및	20~25% 회사채, 20~25% 국채, 50~60% 정기예금,
	주요투자대상	외국계(현지 운용사 중 1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MNC
MNC Dana Lancar	소재지	인도네시아
MING Daria Laricai	주요 특징 및	60~70% 회사채, 30~40% 정기예금,
	주요투자대상	민영(대기업계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Danareksa
Danareksa Seruni Pasar	소재지	인도네시아
Uang II	주요 특징 및 주요투자대상	65~75% 회사채, 25~35% 정기예금, 국영

주1) 상기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실제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중 일부 또는 예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 ⑤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혜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스왑, 옵션 등) 매매를 통하여 환혜지 전략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 ⑥ 투자신탁 설정 초기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 ① 위험관리를 위하여 투자환경 및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변화가 발생 시 포트폴리오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⑧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익구조

- 투자신탁의 투자전략과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 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인해 수익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2)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국가위험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7/116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므로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자금송화위험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И ПООТНЕ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법규나 제도에 의해 법률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항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 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법률위험	제정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자에게 적용되는
	법적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에 대한 소송이 투자기간 중 및 회수 이후에도 제기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혜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	투자자는 외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해외 채권 등은 국내외
	이 구시인의 및 이 구시인의에 인접인 답접구시장인에서 구시하는 에의 제인 중인 의계의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시장위험	마용자공기 에서를 및 기다 가게용체제교기 단최에 떠는 게임에 모르다다. 또한 예상자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해외 채권 등의 거래에
신용위험	있어서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는 경제, 정치, 시장 및
	발행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이
변동성위험	보유하는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산업, 금융시장 및
	증권은 이러한 변화에 달리 반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의 새로운
	변동성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이 특정 업종이나 섹터에 집중되어 해당
집중투자위험	업종 또는 섹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목표수익률 달성으로 전환조건이 달성된 경우에 투자대상을 전환하는
목표수익률 달성	
후 투자대상 전화	즉, 투자전략 변경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산(인도네시아 집합투자증권 등)의 매매하는 날의
과정의 손실위험	기, 가하는 기 년 8 대 기 보다 3년 - 대년(년 호대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
투자신탁의 해지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을
또는 환매에 따른	조정하거나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환매를 위하여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손실 발생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 및 환율(인도네시아
위험	루피아(IDR), 미국 달러(USD))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 누적성과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펀드규모위험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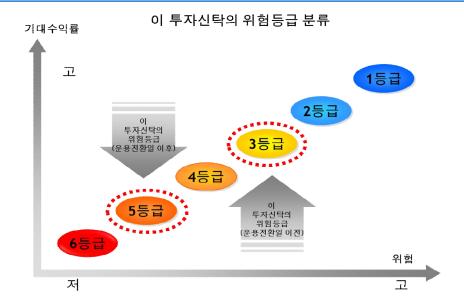
3)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위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오퍼레이션 위험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포피데이션 뒤임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 위험이
	국내 투자 보다 더 높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대량환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위험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수익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환매연기위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한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수 있으며, 특히 수익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해외채권 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국내채권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의 수익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자산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 년을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 예시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Level 1	매우 높은 위험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l avial 0	노이이침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2	높은 위험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3	다소 높은 위험	_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4	보통 위험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5	낮은 위험	_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_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Level 6	매우 낮은 위험	_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혜지 여부 및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1) 매입
- 가.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나.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구분	가입자격
Class A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C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
Class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Class C-F 수익증권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라.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2) 환매

가.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전까지

-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3영업일(D+1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5영업일(D+14)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4영업일(D+1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6영업일(D+15)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운용전환일 이후

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기타 법 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41년 미미나 취에서	이익금의 10%	āl nll A l
1년 미만 환매시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주1) 수익증권의 전환 후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없음

라.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 이전(운용전환일 이후 환매청구일 15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운용전환일 이후 환매청구일 15시 30분 이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 보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바.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일정한 날의 제13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14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한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사.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화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아.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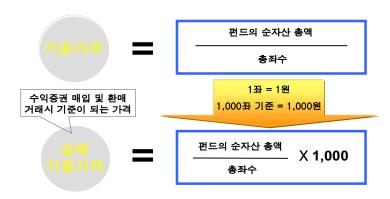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A 74 H H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산정방법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시되조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주기	산정 •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고시조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공시주기	않습니다.
	판매회사 영업점,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 주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② 비상장 주식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TLOL 교 세 지나프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④ 장외파생상품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비경경제권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	행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채무증서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৩ 급립구시 ⁵ 년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 =	그이지코		수수	·료 율	
종류	가입자격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_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A	징구)	0.70% 이내	_		_
А-е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35% 이내	-	- 1년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10%	-
С	가입제한 없음	_	_		-
С-е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	-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해당사항	-
C-F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	없음)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전까지

		지급비율 (연간, %)							
클래스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 수 • 비용(피 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А	0.30	0.30	0.03	0.015	_	0.645	2.025	_	
А-е	0.30	0.15	0.03	0.015	_	0.495	1.875	_	
С	0.30	0.80	0.03	0.015	_	1.145	2.525	_	
С-е	0.30	0.40	0.03	0.015	_	0.745	2.125	_	
C-F	0.30	0.02	0.03	0.015	_	0.365	1.745	_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작성일 현재 설정 전으로 비슷한 유형 투자신탁의 비용을 그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그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작성일 현재 설정 전으로 비슷한 유형 투자신탁의 비용을 그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그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작성일 현재 설정 전으로 비슷한 유형 투자신탁의 비용을 그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그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운용전환일 이후부터 해지일까지

		지급비율 (연간, %)								
클래스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 수・비용(피 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А	0.10	0.10	0.03	0.015	_	0.245	0.245	_		
А-е	0.10	0.05	0.03	0.015	_	0.195	0.195	-		
С	0.10	0.15	0.03	0.015	_	0.295	0.295	-		
С-е	0.10	0.07	0.03	0.015	_	0.215	0.215	-		
C-F	0.10	0.01	0.03	0.015	_	0.155	0.155	_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시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 6개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10 1 2022 1 12 01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_	-	_	_
Δ.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16	_	_	_	_
А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86	_	_	_	_
Λ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71	_	_	_	_
A-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41	_	_	_	_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3	_	-	_	-
С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43	_	_	- - - - - - - -	_
0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49	_	_	-	_
С-е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19	_	_	-	_
0.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7	_	-	-	-
C-F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7	_	_	_	_

● 1년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1년 6개월	-	-	-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5	147	_	_	_
A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73	286	_	_	_
Λ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5	95	_	_	_
A−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24	234	_	_	_
С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51	166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89	304	_	_	_
0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10	121	_	_	_
С-е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49	260	-	-	-
0.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7	45	-	-	-
C-F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77	185	-	-	_

● 2년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2년 6개월	-	-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34	199	211	_	_
A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72	472	484	_	_
Λ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85	135	145	_	_
A-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23	409	419	_	_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15	231	246	_	_
С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54	505	520	_	_
0.0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75	151	162	_	_
С-е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4	426	437	-	_
0.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7	74	82	_	_
C-F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5	351	359	_	_

● 3년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3년 6개월	-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34	198	263	275	_
A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71	470	666	678	_
Λ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84	134	184	194	_
A-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22	408	591	601	_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15	230	345	359	_
С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53	503	749	763	_
0.0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5	150	225	236	_
С-е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3	424	633	643	_
0.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7	74	111	119	_
C-F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5	349	522	529	_

● 4년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4년	4년 6개월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34	198	262	326	338
A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71	469	664	857	868
Λ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4	134	183	233	243
A-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22	407	589	770	779
0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5	229	343	457	471
С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53	502	746	986	1,000
0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5	149	224	299	310
С-е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3	423	631	835	845
0.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7	73	110	147	155
C-F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5	348	520	690	697

● 만기까지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4	198	261	325	389
A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71	468	662	854	1,043
Λ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4	134	183	232	282
A-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22	406	588	767	945
0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5	229	342	455	567
С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52	501	744	982	1,217
0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5	149	224	298	372
С-е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13	422	629	832	1,032
0.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7	73	110	147	184
C-F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5	348	518	687	854

-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투자수익률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투자수익률: 6%(운용전환일 이후 1.5%) 가정
 - 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투자수익률: 8%(운용전환일 이후 1.5%) 가정
 - 다. 만기까지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투자수익률: 5% 가정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1) 요약재무정보해당사항 없음2) 대차대조표해당사항 없음3) 손익계산서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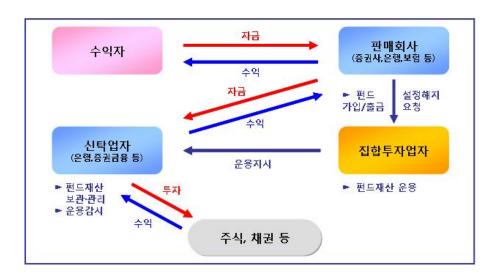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해당사항 없음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1/ 외사개표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12 2 2 14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회사연혁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자본금	4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제29(당)기 제28(전)기 2016.12.31현재 2015.12.31현재		구분	제29(당)기 2016.01.01 ~ 2016.12.31	제28(전)기 2015.01.01 ~ 2015.12.31
현금및예치금	8	27	영업수익	454	461
증권	651	867	영업비용	304	264
대출채권	423	101	영업이익	150	197
유형자산	6	6	영업외수익	3	1
기타자산	105	106	영업외비용	1	10
자산총계	1,193	1,10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52	188
예수부채	2	3	법인세비용	38	42
기타부채	80	64	당기순이익	114	146
부채총계	82	67	기타포괄손익	-10	8
자본금	410	410	총포괄손익	104	154
자본잉여금	173	173			
이익잉여금	532	4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	7			
자본총계	1,111	1,040			
부채및자본총계	1,193	1,108			

4) 운용자산규모

[2017.10.3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파생	파생	파생		
수탁고	12,575	80,458	2,754	10,825	15,639	21,445	26,315	59	98,214	268,286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조시 미 서리되	서울 중구 칠패로 37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02)2004-0000)			
홈페이지	www.kr.hsbc.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①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⑨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
	(연락처: (02) 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
한국자산평가	- 연락처: (02) 399-335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NICE피앤아이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
KIS채권평가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에프엔자산평가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

나,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b)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 총회 등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woom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나.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나.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 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간의 거래내역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채권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 분	상 세				
투자주체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 설정 초기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 도모				
투자시기 및 투자금액	- 최초설정일에 2억원 이상을 일시 납입 예정				
투자기간	- 최소 3년 이상(다만,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 최소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를 통해서 공시 - 최소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투자신탁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투자금 환매시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를 통해서 공시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일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 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